

기관운영감사

감 사 보 고 서

- 한국가스공사 기관운영감사 -

2018. 9.

감 사 원

목 차

I.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1
1. LNG플랜트사업단 계약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통보(인사자료)·주의].....	2
2.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과제의 외부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통보).....	9

1.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감 사 원

통보(인사자료)·주의요구

제 목 LNG플랜트사업단 계약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소 관 기 관 한국가스공사
조 치 기 관 한국가스공사
내 용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라 한다) 가스연구원 ○센터 A는 2008. 6. 17. 위 공사가 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구 가스플랜트 사업단¹⁾(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총괄기관²⁾으로 선정된 뒤 같은 해 6. 18.부터 2014. 9. 26.까지 ‘가스플랜트 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으로 사업단 업무를 총괄³⁾하면서, 2009. 12. 9. 자신의 처조카인 B를 계약직원으로 채용하려는 문서와 2011. 12. 29. 및 2012. 12. 31. B와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문서에 결재하는 등 B의 채용 및 근로계약 연장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리고 A는 자신의 관용차량 운전기사였던 C를 2013. 1. 3. 계약직원으로 채용

-
- 1) ‘가스플랜트 사업단’은 해양플랜트 건설 및 실제 운용을 위한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총괄과제 등 계 30개의 세부 연구개발과제(총연구비 1,183억여 원)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을 의미함, 2010. 9. 30부터 LNG플랜트사업단으로 명칭 변경
 - 2)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괄기관’이란 사업단장의 소속기관을 말하므로 한국가스공사임
 - 3) ‘사업단장’은 ‘가스플랜트 사업단’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직위이고, 사업단장이 연구책임자인 1개의 연구개발과제를(연구개발과제명: 테스트베드 통합적용을 위한 기술체계 및 운영기술 개발, 약칭: 총괄과제) 제외하고, 나머지 29개 연구개발과제는 각기 다른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주관

하려는 문서와 2014. 5. 27. C와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문서를 결재하는 등 C에 대한 채용 및 근로계약 연장 업무를 총괄하였다.

또한 위 공사 가스연구원 ○센터 D는 2014. 10. 6. A의 후임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뒤 2017. 7. 21.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단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5. 12. 8., 2016. 6. 17., 2016. 12. 16. 및 2017. 6. 28. 각각 C와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문서를 결재하는 등 C에 대한 근로계약 연장업무를 처리하였다.

가스공사와 진흥원이 2008. 9. 10. 체결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사업단 총괄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단장은 진흥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단 관리운영기준을 제정·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진흥원이 2009. 2. 23. 승인한 「가스플랜트사업단 관리운영 기준」 제11조에 따르면 사업단장은 사업단 사무국⁴⁾ 운영에 필요시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총괄기관의 내부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총괄기관인 가스공사의 계약직원에게 적용되는 가스공사의 「별정직 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계약직원의 채용 목적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계약직원 운영계획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학력 및 경력 증명서 등의 인사기록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4급(대리급) 대우 이하 계약직원의 채용은 보통인사위원회⁵⁾의 심의⁶⁾를 거친 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

4) 「가스플랜트사업단 관리운영 기준」 제4장.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따르면 사업단 사무국은 연구관리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되고, 사업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조직으로 사업단장은 필요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시로 직원을 채용하는 등 임면이 가능하도록 규정

5) 보통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장(인사노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6명 이상의 1 또는 2급 직원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인사팀장임

6)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보통인사위원회는 채용과 관련하여 ‘기타 인사담당본부장

으며, 같은 규정 제8조의2에 따르면 계약직원의 근로계약 연장 시에도 계약직원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단장이 사업단 사무국의 계약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가스공사 「별정직 관리규정」 등에 따라 계약직원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학력 및 경력 증명서 등의 인사기록서류를 갖추어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를 등을 확인한 뒤 보통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하여야 하며 계약 직원과 근로계약을 연장 시에도 계약직원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재계약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1. B 채용업무 부당 처리

그런데도 A는 2009. 12월 경 해당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의 처조카인 B가 □□대학교 △△학과에 재학 중이고 아무런 경력이 없는데도 사무국 예산팀장 E에게 “B를 □□대학교를 자퇴한 상황이고 전업 연구원으로 연구를 할 수 있으니 채용하라”고 말하며 B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09. 12. 9. B가 □□대학교를 중퇴⁷⁾하고 제어계측분야 프리랜서 경력을 가진 것처럼 채용서류를 작성한 후 B를 ‘시스템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연구개발 과제(이하 “총괄과제”라 한다)의 플랜트관리를 담당하는 계약직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으로 “가스플랜트사업단 총괄과제 위촉직원 활용” 문서를 작성하였고, A

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데, 실무적으로 채용지원자의 학력, 경력 등 요구자격 등이 작성된 채용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심의함

7) E는 B가 □□대학교를 자퇴하였다는 A의 말을 믿고 ‘중퇴’로 작성함

는 「별정직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직원운영계획서(초임직원용) 작성, 학력·경력증명서 등 인사기록서류 확보 및 보통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위 문서를 결재한 뒤 B와 2010. 1. 4.부터 2014. 4. 17.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⁸⁾하였다.

또한 A는 2011. 12. 29. 및 2012. 12. 31. 각각 B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내부분서를 결재하여 B와의 근로계약을 2016. 6. 17.까지 연장하였고, 2010. 1. 4.부터 B가 퇴사한 2014. 7. 15.까지 총 4년 7개월간 B에게 총괄과제의 연구개발비로 외부인건비 등 계 181,487,477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2. C 채용업무 부당 처리

한편 A는 2012년 12월 초경 2011. 12. 2.부터 2012. 12. 26.까지 자신(▷원장)의 관용차량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중이던 주식회사 ▽▽ 소속 파견직원 C의 파견종료 시점⁹⁾이 다가오자 해당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C에게 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할 사무국 직원으로의 입사를 제안하며 C의 채용을 추진하였다.

그 뒤 A는 사무국장 F에게 가스공사 ▷원장의 관용차 운전기사 경력 외에는 아무런 직장경력이 없는 C를 사무국 계약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 3. F와 연구관리팀장 G는 C를 총괄과제의 연구관리 및 테스

8) B는 위 기간 중 2010. 1월 부터 2011. 8월까지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3학기(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동안 수업참여, 시험 등 학교 수업을 병행

9) A는 C의 파견 종료시점 즈음인 2012. 12월 초경 사석에서 C를 만나 ‘파견 종료이후 갈 곳이 있느냐’고 물어본 후 C가 2012. 12월말 시점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갈 자리가 없다고 대답하자 물품 운반 등 완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으로 입사를 제안

트베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총괄과제 수행인력 신규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문서를 작성하였고, A는 「별정직 관리규정」에 따른 계약직원운영계획서 작성, 학력·경력증명서 등 인사기록서류 확보 및 보통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위 문서를 결재한 뒤 C와 2013. 1. 7. 부터 2014. 6. 17.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A는 「별정직 관리규정」에 따른 계약직원운영계획서 작성 등을 거치도록 하지 아니한 채 2014. 5. 27. C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문서를 결재하여 C와의 근로계약을 2014. 6. 18.부터 2015. 12. 17.까지 연장 체결하였다.

그 후 A의 후임 사업단장인 D도 「별정직 관리규정」에 따른 계약직원운영계획서 작성 등을 거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전임 사업단장인 A가 C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2015. 12. 8., 2016. 6. 17., 2016. 12. 16. 및 2017. 6. 28. 계 4회에 걸쳐 C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내부문서를 결재하여, C와 근로계약을 2017. 12. 31.까지 연장 체결하였다.

또한 A와 D는 C에게 사무국의 사무실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또는 회의책자 운반 등 단순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¹⁰⁾ 2013. 1. 7.부터 C가 퇴사한 2017. 7. 31¹¹⁾까지 총 4년 7개월간 C에게 총괄과제의 연구개발비로 외부인건비 등 계 176,998,258원이 지급되게 하였다.

그 결과 A와 D는 위 “1항” 및 “2항”의 내용과 같이 해당 업무에 필요한 경력 및

10) 총괄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는 C를 실제와 다르게 ‘연구개발과제관리 스케줄(PMS)’ 업무를 담당하도록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였으며, 실제로 ‘PMS’업무는 사무국 직원 H가 담당

11) C의 근로계약은 2013. 1. 7.부터 2017. 12. 31.까지였으나 2017. 7. 31. 퇴사함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B와 C를 「별정직 관리규정」에 따른 보통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인사질서를 어지럽혔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A는 감사원 조사(2017. 8. 22.)에서 「별정직 관리규정」 등을 적용하여 사업단 사무국 계약 직원을 채용하여야 하고, 보통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학력이나 경력 요구사항을 미리 정한 후 직원을 채용하여야 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한편 A는 「별정직 관리규정」 등 가스공사의 내부규정을 준용할 경우 연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끌고 갈 수 없고, 기능별 인력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단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흥원은 사업단장에게 소속기관으로부터 인사, 예산집행권 등의 독립을 보장받은 것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조성 목적이지만 사업단장이 일정한 기준 없이 마음대로 사업단을 운영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어 A의 주장은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아니 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① B와 C를 「별정직 관리규정」에 따른 채용절차를 거치도록 하지 아니한 채 계약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A의 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비위내용

을 통보하오니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통보(인사자료)]

② 「별정직 관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전임 사업단장인 A가 C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C와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현 사업단장 D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과제의 외부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부담 집행
소 관 기 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조 치 기 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내 용

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08. 6. 17. 구 국토해양부 R&D과제인 ‘가스플랜트 사업단’¹²⁾(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총괄기관과 가스플랜트 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으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라 한다)와 위 공사 직원인 A를 각각 선정하였다.

그 뒤 사업단장 A는 2008. 6. 18.부터 2014. 9. 26.까지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총괄과제¹³⁾(연구개발과제명: 테스트베드 통합적용을 위한 기술체계 및 운영 기술 개발)의 연구책임자로 연구개발과제 주관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총괄하였고, 후임 사업단장인 D는 2014. 10. 6.부터 2017. 9. 26.¹⁴⁾현재까지 사업단 업무를

12) ‘가스플랜트 사업단’은 해양플랜트 건설 및 실제 운용을 위한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총괄과제” 등 계 30개의 세부 연구과제로 구성된 초대형 연구개발사업[총 예상사업비 1,186억 원(정부출연금 806억 원, 민간 380억 원)]을 의미, 2010. 9. 30부터 LNG플랜트사업단으로 명칭 변경

13) 사업단을 구성하는 세부 연구개발과제 계 30개 중, 총괄과제 외에 나머지 29개 과제의 실제 연구성과를 테스트해 보는 모의 플랜트인 “테스트베드”에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율·관리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말하고, 총괄과제는 사업단장이 직접 연구책임자가 되어 주관하는 유일한 연구개발과제임

14) 사업단은 당초 2008. 6. 18.부터 2014. 6. 17.까지 총 6년 기간의 연구개발기간으로 개시하였으나, 사업단장과 진흥원은 4회의 추가적 기한연장(연구개발기간이 길다보니 압축기 개발 등 실패하는 과제들 발생으로 연장)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비 금액을 증액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8. 6. 18.부터 2018. 10. 7.까지 사업단의 연구기간 연장

총괄하면서 총괄과제도 주관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5556호)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799호, 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 [별표 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사용 용도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세목인 ‘외부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고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해당 세목: 지원인력 인건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리규정 제19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 기준 및 범위”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등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회수할 수 있고,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별표 4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에 따르면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개발비를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

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단장이 총괄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때에는 총괄과제의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직접비의 세목인 ‘외부인건비’ 또는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구물품 운반 등 단순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간접비¹⁵⁾(지원인력 인건비)에서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2013. 1. 7. A는 사업단장을 보좌하는 조직인 사무국의 계약직원으로 C를 채용한 뒤 C가 책자 및 팜플렛 운반, 소모품 구입 등 단순 행정 지원 업무만 수행하였는데도 2013. 4. 18. 6차년도 총괄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C를 ‘연구개발과제 스케줄’ 관리 등 연구진도관리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였고, 후임 사업단장 D도 2014. 10. 8. 및 2015. 5. 1. 각각 7차, 8차년도 총괄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A와 같은 방법으로 C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2013. 1. 4.(출근일)부터 2017. 7. 31.(퇴사일)까지 A와 D는 C에게 외부인건비로 167,043,258원¹⁶⁾을, 연구수당으로 9,955,000원¹⁷⁾을 지급하여 계 176,998,258원의 정부출연금¹⁸⁾을 부당 집행하였다.

15) 관리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 제12조 제5항 [별표 2]에 따르면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간접비산출위원회에서 각 공공기관을 포함한 연구기관의 지원인력 인건비 등에 사용하는 간접비 규모 산정을 위한 비율을 고시하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간접비 비율이 ‘17% 한도’로 ‘전년도 결산실적 기준의 직접비(직접비성 인건비 포함)× 17% 범위 내’에서 간접비 총액을 계상 또는 지급받고 있고, 전문기관이 사업단 등에 간접비를 지급 시에는 인력 지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 간접비 총액으로 배정함

16) A가 지급한 금액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근로계약 체결기간) 102,143,922원, 나머지 64,899,336원은 D가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근로계약 체결기간) 지급

17) 연구수당은 3회(C와의 근로계약 체결기간) 모두 A가 지급

18) 총괄과제의 연구개발비는 100% 정부출연금으로 구성(민간부담금 없음)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진흥원은 연구개발과제인 총괄과제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외부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며, 이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C에게 부당 지급된 외부인건비와 연구수당을 환수조치하고, 사업단장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6항 및 제27조 제1항 등에 따라 C에게 부당하게 집행된 외부인건비 등 정부출연금 176,998,258원을 회수하고, 전·현직 엘엔지(LNG)플랜트 사업단장인 A 및 D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